서울특별시 금천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2월 1일
복 지 건 설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10일, 정재동 의원

나. 회부일자 : 2022년 11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2년 12월 1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스포츠클럽법」(시행 2022. 6. 16. / 제정 2021. 6. 15.)이 시행됨에 따라 스포츠클럽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천구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스포츠클럽 등록 및 취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스포츠클럽 지원 및 신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스포츠클럽 회계관리, 보고·검사, 보조금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에서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추병수

나. 검토의견

1) 제정 이유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스포츠클럽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천구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1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주요내용

(1) 안 제2조(정의)

-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인용하여 사용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2) 안 제4조(구청장의 책무)

- 안 제4조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과 장애인 스포츠클럽 활동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법 제3조 근거)

(3) 안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명시함.(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근거)

(4) 안 제7조(지원 및 범위)

-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규정을 명시함.

- 상위 법령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을 마련함.
- 스포츠클럽의 시설사용료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감면조항을 규정함.

(5) 안 제8조~제11조(지원 신청, 회계관리, 보고 감사 등)

-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환수 규정까지 근거함.

다. 검토의견

○ 스포츠클럽은 체육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적 모임의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상호 강습활동 또는 강좌 개설, 선수 양성 등을 통해 체육시설, 전문지도자 및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공급하여 생활체육 여건을 개선하는 공적인 목적도 아울러 가지고 있음.
따라서 스포츠클럽은 정부 주도의 생활체육 인프라 마련 또는 민간 시장형 체육업체 등과는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제3의 영역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기 위해 「스포츠클럽법」(시행 2022. 6. 16. / 제정 2021. 6. 15.)이 제정됨.

○ 이와 관련하여 스포츠클럽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실질적인 연계방안 중 하나로서, 국민들이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생활체육을 자유롭게 향유하면서도, 동시에 스포츠클럽에서 두각을 나타낸 선수들에게 전문 종목지도와 대회참가자격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엘리트 운동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음.

○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소재하거나 활동하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구의 책무,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 및 목적 등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례 제정 현황(2022. 11월 기준)**

- 서울시 6개 자치구(강서, 광진, 구로, 노원, 마포, 영등포)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